

의안번호	제 909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·조사 및
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윤남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1월 10일

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윤남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1월 10일
발 의 자 : 윤남진, 연종석, 송미애
원갑희, 이상정, 이상식
서동학

1. 제안이유

-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수수료 적용 근거 규정 정비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수수료 적용 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을 정비 함(안 제4조제2항)
-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 함(안 제4조제4항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함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조례안 예고 대상
- 관련부서 협의 :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뢰 하고자”를 “의뢰하고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출 하여야”를 “제출하여야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「국립수산과학원 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」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.

③ 시험·조사(연구용역)의 수수료는 설계서에 의한 견적가격에 의하며, 시험·조사 시 시료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수수료를 견적가격에 포함 시킨다.

④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⑤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반환하고,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일내에”를 “기일 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교부 받고자”를 “교부받고자”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기능수행상”을 “기능 수행상”으로, “의뢰 할 경우에는”을 “의뢰할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, “행하여도”를 “행해도”로 하고, “남아있는”을 “남아 있는”으로 하며, “반환 하여야”를 “반환하여야”로 한다.

별표 1 중 “기생성 질병검사”를 “기생충성 질병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) ①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에 시험·조사 및 분석(이하 “시험 등”이라 한다)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필요시 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을 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연구소에 수산관련 시험·조사(연구용역)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의뢰서에 시험·조사 기준 및 방법 등 시험·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설계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4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 시료의 분석 수수료는 「국립수산과학원시험·조사및분석의뢰규칙」 제5조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. 다만, 항생물질 시료의 분석 수수료는 「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0조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수수료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.</p>	<p>제3조(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<u>의뢰하고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출하여야</u>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「국립수산과학원 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」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.</p> <p>③ 시험·조사(연구용역)의 수수료는 설계서에 의한 견적가격에 의하며, 시험·조사 시 시료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시험·조사(연구용역)의 수수료는 설계서에 의한 견적가격에 의하며, 시험·조사 시 시료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견적가격에 포함 시킨다.</p> <p>④ 시험 등의 사본 발급수수료는 「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0조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.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납부금액이 일십만원을 초과할 때는 연구소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반환하고,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 사항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.</p> <p>제5조(성적서 교부 등) ① 연구소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성적서 교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</p>	<p>제2항의 수수료를 견적가격에 포함 시킨다.</p> <p>④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</p> <p>⑤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반환하고,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.</p> <p>제5조(성적서 교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다. 다만, 사정에 의하여 <u>기일내</u>에 시험 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험 등의 성적서 사본을 <u>교부</u> 받 <u>고</u>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본 발급 의뢰서를 소장에게 제출한다.</p> <p>제6조(수수료 면제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산하기관 포함) 또는 수산단체가 그 <u>기능수행상</u> 필요에 의하여 분석을 <u>의뢰</u>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<p>제8조(검체 등의 처리)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설계서는 반환하지 <u>아니한다</u>. 다만, 시험·분석을 <u>행하여도</u> 그 사용가치가 <u>남아</u>있는 검체는 시험·분석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이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<u>반환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[별표 1] 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(제3조제4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험·분석 종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처리기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기생성 질병검사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류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험·분석 종별	처리기간	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	<u>기생성 질병검사</u>	13일	어류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	<p>-----<u>기일</u> 내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교부</u> <u>받고</u>자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수수료 면제) ----- ----- -----<u>기능 수행상</u>----- -----<u>의뢰</u>할 경우에는 -----.</p> <p>제8조(검체 등의 처리) ----- ----- -----<u>않는다</u>.----- <u>행해도</u>-----<u>남아</u> 있는 ----- ----- -----<u>반환</u>하여야-----.</p> <p>[별표 1] 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(제3조제4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험·분석 종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처리기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기생충성 질병검사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류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험·분석 종별	처리기간	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	<u>기생충성 질병검사</u>	13일	어류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
시험·분석 종별	처리기간	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											
<u>기생성 질병검사</u>	13일	어류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											
시험·분석 종별	처리기간	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											
<u>기생충성 질병검사</u>	13일	어류 10마리 (살아있는 상태)											

관련법령 발췌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□ 전자정부법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□ 국립수산물과학원 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

제5조(수수료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·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

제8조(결과서 교부등) ① 원장은 시험·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분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○ 첨부 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① ~ ③ 생략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○ 사 유

-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선언적 규정의 내용으로 비용추계 첨부 제외 대상임